

의안번호	2217118
의 퇴 인	강선영의원
회 답 일	2026.4.29.
추계번호	25D6968

국방 ·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 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4조의3제3항 (실태조사 등)	국방부장관이 2년마다 실시하는 국방·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때, 군사 대피시설의 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(제2항)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가 국방·군사시설로서 사용·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, 사용권 등 권원(權原)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고 군사 대피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된 군사 대피시설이 방호성능 및 안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 또는 성능보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(제3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14조의3제3항 (실태조사 등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-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2년마다 실시하는 국방·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때, 군사 대피시설의 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,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
- 국가가 국방·군사시설로서 사용·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,

사용권 등 권원(權原)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함

- 군사 대피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된 군사 대피시설이 방호성능 및 안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 또는 성능보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

□ 개정안에 따라 군사 대피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된 군사 대피시설이 방호성능 및 안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성능을 보강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□ 다만, 개정안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 대피시설의 개념, 각 대피시설별, 상황별 대피 대상인원을 고려하여 추가로 설치해야 할 시설의 수, 대피시설의 방호성능 및 안전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및 계획이 미비하여,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- 대피시설은 통상적으로 적의 공격 시 군 전체가 대피할 수 있는 시설로 방호시설과는 다른 개념으로 인식되나, 현재 대피시설 관련 구체적인 개념이나 시설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

- 대피시설과 달리 「국방 군사시설 기준」에서는 방호를 “적의 지상 및 공중 공격으로부터 아군의 병력, 시설 및 장비를 보호하고 피해를 감소시킴으로써 작전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, 방호등급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음

□ 참고로, 현행법 제14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 주기로 국방부가 직접 수행하고 있으나, 대피시설 현황은 현재 실태조사 대상이 아니며 대피시설 현황 관련 자료는 부재함

IV. 부대의견

□ 해당사항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